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가합51227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2016. 7. 8.

판결 선고2016. 8.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30,386,486원 및 그 중 255,549,319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71,060,223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각 2016. 3. 1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4. 12.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B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195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1)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5. 4.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C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700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금액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1	1차보증	2013. 3. 28.	90,000,000	2014. 3. 27. (2016. 3. 25.)	E	국민은행	100,000,000원	기업일반 자금대출
2	2차보증	2014. 2. 28.	180,000,000	2015. 2. 27. (2016. 2. 26.)	F	국민은행	200,000,000원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3	3차보증	2014. 9. 16.	252,000,000	2021. 9. 15.	G	농협은행	280,000,000원	일반시설 자금대출

- 2)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1.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00,000,000원을, 2014. 3. 3.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200,000,000원을, 2014. 9. 19. 농협은행으로부터 일반시설자금 28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 3)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② 위

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2016. 2. 23.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 수수료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국민은행은 2015. 8. 19.경 원고에게, 피고 A이 2015. 7. 7. 이자 연체로 대출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6. 2. 24. 국민은행에 합계 271,060,223원(= 제1신용보증약정의 대출원금 85,500,000원 + 이자 1,620,060원 + 제2신용보증약정의 대출원금 180,000,000원 + 이자 3,940,163원)을 변제하였다.

2) 농협은행은 2015. 12. 16.경 원고에게, 피고 A이 2015. 10. 16. 원금 연체로 대출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6. 2. 23. 농협은행에 255,549,319원(= 제3신용보증약정의 대출원금 252,000,000원 + 이자 3,552,509원 - 차감이행금 3,190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1,877,91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합계 1,889,034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은 2014. 12. 9.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A 및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15. 4.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합계 530,386,486원(= 제1, 2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71,060,223원 + 제3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55,549,319원 + 위약금 1,877,910원 + 채권보전비용 1,899,034원) 및 그 중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71,060,223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2. 24.부터,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55,549,319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2.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3. 1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4. 12. 9.경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피고 A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등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경과한 2015. 3. 28.경 피고 A에 대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됨으로써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7. 7.경 피고 A이 국민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 A의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89,383,5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시가 합계 약 32,217,600원 상당인 차량 3대(2011년형 SM7 1대, 2007년형 포터II 1대, 1998년형 SM525V 1대)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외에도 조암농협에 대한 신용대출금채무 30,000,000원, 반월농협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채무 478,000,000원, 하나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채무 75,078,643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출금채무, 물품대금채무, 카드대금채무 등이 있어, 피고 A은 위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한편, 피고 A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2. 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으로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피고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H이 피고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D'와 법인사업체인 주식회사 D에게 계속적으로 부동액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오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누적되자, 피고 A이 피고 B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B에게 기존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무에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4. 12. 9. 피고 A, 주식회사 D와 피고 B, 주식회사 H이 물품거래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물품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에게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9호증, 을나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 스스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 운영의 주식회사 D와의 상거래 관계에서 잔액의 규모가 커서 이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피고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사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채무 합계액이 319,037,725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 B는 위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존 물품대금채무액에 근접한 금액인 3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 B나 주식회사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주식회사 H는 2015. 7. 10.경까지 주식회사 D에게 일부 물품공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합계액은 2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종전의 거래 규모에 비추어 상당히 축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이 피고 B 또는 주식회사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 B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위 피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B는 피고 A 및 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 근접한 금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물품대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수익자인 피고 B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등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5. 3. 28.경 피고 A에 대하여 연체정보가 등록됨으로써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2015. 7. 7.경 피고 A이 국민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 A의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4. 9.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10.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로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윤성식

판사송유림

판사이성민

별지